

의안번호 제150호

2019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윌일	2022. 10. 6.

2019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 안 번호 제150호

제출연월일: 2022. 10. 6. 제 출 자: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원안가결, 2019. 9. 23) 및 변경관리계획(원안가결, 2021. 4. 19)을 의결 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변경(취득) 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조에 따라 2019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인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9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안건 10건중 1건 변경

연번	사	업		명	소관부서	刊	고
1	상월공원	조성사업			산림공원과	일번	<u>-</u> 회계
2	도시재생	뉴딜사업(해월	릴마을))	도시친화 재생과	(일반회계+도/	시재생특별회계)
3	도시재생	뉴딜사업(강경	불마을))	도시친화 재생과		- - - - - - - - - - - - - - - - - - -
4	은진면 교	촌리 공영주차정	<i>조</i> 성	사업	안전도로과	일빈	<u>ŀ</u> 회계
5	탑정호 일유	원 주차장 및 기	반시설	설 조성사업	미래사업과	일번	· 보회계

연번	사 업 명	소관부서	비 고
6	시유재산 토지 처분	회계과	일반회계
7	반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안전도로과	주차장특별회계
8	논산시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안전도로과	주차장특별회계
9	강경읍 중앙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안전도로과	주차장특별회계
10	강경읍 남교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안전도로과	주차장특별회계

○ 2019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m², 천원)

일련		재 산 표 시		カスカカ	취득	취득사유		
번호	구분	소 재 지	면적	기준가격	시기	쉬득사ㅠ	비고	
		사업별 개요 참조						

○ 2019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처분대상 재산목록

(단위:m², 천원)

일련		재 산 표 시		기준가격	처분	처분 처분사유		
번호	구분	소 재 지	면적	7 七 7 ²	시기	기군/۲Ⅱ	비고	
		해 당 없 음						

3. 2019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m², 천원)

		당결	초 (20	21.	4. 29)		변	た]	
구분	사 업 명	면	면 적		· 추지키거	면	적		シスコカ	비고
		토지	건물 (동)	기 타	추정가격	토지	건물 (동)	기 타	추정가격	
	계	145,506.5	37	0	34,269,282	145,784.5	38	0	34,364,382	
	9건	148,444.5	37	0	34,340,108	148,722.5	38	0	34,435,208	
	상월공원 조성사업	20,335			696,218	20,335			696,218	
	도시재생 뉴딜시업해윌마음 (A)	5,922	7		2,852,268	5,922	7		2,852,268	
	도시재생 뉴딜사업(강경마을)	10,127	30		3,167,672	10,405 (중 278)	31 (증1)		3,262,772 (중 95,100)	변경
	은진면 교촌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446			300,000	1,446			300,000	
취득	탑정호 일원 주치장 및 기반시설 조성시업	101,213			16,884,377	101,213			16,884,377	
	반월동 공영주차장 조성시업	1,008			989,573	1,008			989,573	
	논산시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3,124.5			5,500,000	3,124.5			5,500,000	
	강경읍 중앙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309			550,000	1,309			550,000	
	강경읍 남교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960			3,400,000	3,960			3,400,000	
چ) H	1건	2,938	0	0	70,826	2,938	0	0	70,826	
처분	시유재산 토지 처분	2,938	0	0	70,826	2,938	0	0	70,826	

4. 사업별 개요

③ 도시재생 뉴딜사업(강경마을)

- □ 처분 및 취득 개요
 - O 사업목적 및 용도
 - 목 적: 도시재생 뉴딜사업(강경마을)의 세부사업중 마을공방의 추진 및 사업 실현가능한 대상지의 확보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함
 - 용 도: 마을공방, 공예체험관, 기념품 전시 등
 - O 사업기간: 2020년 ~ 2023년(4년간)
 - O 취득위치:
 - ┏ 당초: 강경읍 북옥리 79-3번지 등 61필지(10,127㎡), 30동

추가취득(+): 강경읍 중앙리 10-1번지 등 3필지 (278㎡) 1동

- └ 변경: 북옥리 79-3번지 등 64필지(10,405㎡) 31동
- O 소요예산: 4,176,391천원(국비 60%, 도비 12%, 시비 28%)
- O 사업규모: 실시계획 수립시 사업규모 산정예정
- O 취득재산 대상내역
- 변경 취득 대상: 토지

(단위: m², 천원)

		딩	・		변경				
연번	재	산 표	시	추정가격	재	산 표 /	시	추정가격	비고
	소재지	지번	면적	十份/1年	소재지	지번	면적	十岁/1年	
계	61필지		877	184,148	64필지		877	184,148	3필지 추가
1	복옥리	78-3	10	2,034	복옥리	78-3	10	2,034	
2	복옥리	75-2	43	8,746	복옥리	75-2	43	8,746	
3	복옥리	76-1	407	80,260	복옥리	76-1	407	80,260	변경없음
4	복옥리	77-1	186	36,679	복옥리	77-1	186	36,679	世の畝市
5	복옥리	71-2	79	24,205	복옥리	71-2	79	24,205	
6	복옥리	80	152	32,224	복옥리	80	152	32,224	

		딩	- 초			변	 경		
연번	재	산 표	시	11	재	산 표 /	시		비 고
	소재지	지번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지번	면적	추정가격	
7	복옥리	78-1	407	82,783	복옥리	78-1	407	82,783	
8	복옥리	73-2	241	77,698	복옥리	73-2	241	77,698	
9	복옥리	81-1	221	46,852	복옥리	81-1	221	46,852	
10	복옥리	79-1	175	56,420	복옥리	79-1	175	56,420	
11	홍교리	72-5	278	84,484	홍교리	72-5	278	84,484	
12	홍교리	73	172	77,038	홍교리	73	172	77,038	
13	홍교리	72-1	76	32,649	홍교리	72-1	76	32,649	
14	홍교리	72-3	93	39,952	홍교리	72-3	93	39,952	
15	홍교리	71-3	10	4,119	홍교리	71-3	10	4,119	
16	홍교리	69-6	7	2,643	홍교리	69-6	7	2,643	
17	홍교리	71-2	83	36,503	홍교리	71-2	83	36,503	
18	홍교리	71-1	86	37,642	홍교리	71-1	86	37,642	
19	홍교리	69-4	79	28,605	홍교리	69-4	79	28,605	
20	홍교리	69-5	60	22,716	홍교리	69-5	60	22,716	
21	홍교리	69-2	169	63,121	홍교리	69-2	169	63,121	
22	태평리	10-5	89	48,416	태평리	10-5	89	48,416	
23	태평리	10-30	95	51,680	태평리	10-30	95	51,680	
24	태평리	10-31	92	50,048	태평리	10-31	92	50,048	
25	태평리	10-32	64	34,816	태평리	10-32	64	34,816	
26	태평리	10-33	63	34,272	태평리	10-33	63	34,272	
27	태평리	10-34	67	36,448	태평리	10-34	67	36,448	변경없음
28	태평리	10-9	23	6,352	태평리	10-9	23	6,352	①/0 W D
29	태평리	10-25	149	40,319	태평리	10-25	149	40,319	
30	태평리	10-35	89	38,216	태평리	10-35	89	38,216	
31	태평리	10-4	89	47,187	태평리	10-4	89	47,187	
32	태평리	10-29	89	36,596	태평리	10-29	89	36,596	
33	태평리	10-10	89	37,682	태평리	10-10	89	37,682	
34	서창리	94	759	212,671	서창리	94	759	212,671	
35	서창리	36-3	608	661,929	서창리	36-3	608	661,929	
36	서창리	43-1	185	194,416	서창리	43-1	185	194,416	
37	서창리	42	344	291,643	서창리	42	344	291,643	
38	서창리	31-11	261	68,904	서창리	31-11	261	68,904	
39	서창리	36-1	671	335,768	서창리	36-1	671	335,768	
40	서창리	34	683	331,938	서창리	34	683	331,938	
41	서창리	70-7	496	270,518	서창리	70-7	496	270,518	
42	홍교리	38-1	109	15,554	홍교리	38-1	109	15,554	
43	홍교리	38-4	76	10,966	홍교리	38-4	76	10,966	
44	홍교리	38-5	13	1,427	홍교리	38-5	13	1,427	
45	홍교리	38-6	17	1,944	홍교리	38-6	17	1,944	
46	홍교리	38-2	1	38	홍교리	38-2	1	38	
47	홍교리	38-3	7	272	홍교리	38-3	7	272	
48	홍교리	39	139	20,057	홍교리	39	139	20,057	

		딩	- 초			변	경		
연번	재	산 표	시	추정가격	재	산 표 /	시	추정가격	비 고
	소재지	지번	면적	十分パタ	소재지	지번	면적	十分パタ	
49	홍교리	39-2	139	20,891	홍교리	39-2	139	20,891	
50	홍교리	39-1	20	1,022	홍교리	39-1	20	1,022	
51	서창리	8-3	145	13,630	서창리	8-3	145	13,630	
52	서창리	30-8	418	73,066	서창리	30-8	418	73,066	
53	서창리	28-5	30	6,585	서창리	28-5	30	6,585	
54	서창리	30-1	66	5,530	서창리	30-1	66	5,530	
55	서창리	30-5	46	12,838	서창리	30-5	46	12,838	
56	서창리	30-6	129	35,268	서창리	30-6	129	35,268	
57	서창리	5-4	290	108,779	서창리	5-4	290	108,779	
58	서창리	5-7	17	4,229	서창리	5-7	17	4,229	
59	서창리	16-14	94	9,268	서창리	16-14	94	9,268	
60	서창리	16-1	185	18,241	서창리	16-1	185	18,241	
61	서창리	16-15	147	14,494	서창리	16-15	147	14,494	
62					중앙리	10-1	96	38,995	
63					중앙리	10-2	76	17,487	추가매입
64					중앙리	10-6	106	21,518	

- 변경 취득 대상: 건물

(단위: 천원)

		딩	초			변	경		
연번	재	산 표	시	추정가격	재	산 표	시	추정가격	비고
	소재지	지번	규모	十分八年	소재지	지번	규모	十8/79	
계	30동			739,763	31동			739,763	1동 추가
1	복옥리	75-2	지상1층	8,746	복옥리	75-2	지상1층	8,746	
2	복옥리	76-1	지상1층	80,260	복옥리	76-1	지상1층	80,260	
3	복옥리	77-1	지상1층	36,679	복옥리	77-1	지상1층	36,679	
4	복옥리	71-2	지상1층	24,205	복옥리	71-2	지상1층	24,205	
5	복옥리	80	지상1층	32,224	복옥리	80	지상1층	32,224	
6	복옥리	78-1	지상1층	82,783	복옥리	78-1	지상1층	82,783	
7	복옥리	73-2	지상1층	77,698	복옥리	73-2	지상1층	77,698	
8	복옥리	81-1	지상1층	46,852	복옥리	81-1	지상1층	46,852	변경없음
9	복옥리	79-1	지상1층	56,420	복옥리	79-1	지상1층	56,420	UONT
10	태평리	10-5	지상2층	48,416	태평리	10-5	지상2층	48,416	
11	태평리	10-30	지상1층	51,680	태평리	10-30	지상1층	51,680	
12	태평리	10-31	지상1층	50,048	태평리	10-31	지상1층	50,048	
13	태평리	10-32	지상1층	34,816	태평리	10-32	지상1층	34,816	
14	태평리	10-33	지상1층	34,272	태평리	10-33	지상1층	34,272	
15	태평리	10-34	지상1층	36,448	태평리	10-34	지상1층	36,448	
16	태평리	10-35	지상1층	38,216	태평리	10-35	지상1층	38,216	

		당	·			변	경		
연번	재	산 표	시	ネスコ거	재	산 표	시	ネスコフ	비고
	소재지	지번	규모	추정가격	소재지	지번	규모	추정가격	
17	태평리	10-4	지상1층	47,187	태평리	10-4	지상1층	47,187	
18	태평리	10-29	지상1층	36,596	태평리	10-29	지상1층	36,596	
19	태평리	10-10	지상1층	37,682	태평리	10-10	지상1층	37,682	
20	홍교리	38-1	지상2층	15,554	홍교리	38-1	지상2층	15,554	
21	홍교리	38-4	지상2층	10,966	홍교리	38-4	지상2층	10,966	
22	홍교리	39	지상2층	20,057	홍교리	39	지상2층	20,057	
23	서창리	8-3	지상1층	13,630	서창리	8-3	지상1층	13,630	
24	서창리	30-8	지상1층	73,066	서창리	30-8	지상1층	73,066	
25	서창리	30-6	지상2층	35,268	서창리	30-6	지상2층	35,268	
26	서창리	30-5	지상1층	12,838	서창리	30-5	지상1층	12,838	
27	서창리	5-4	지상2층	74,400	서창리	5-4	지상2층	74,400	
28	서창리	5-7	지상2층	4,229	서창리	5-7	지상2층	4,229	
29	서창리	16-1	지상1층	18,241	서창리	16-1	지상1층	18,241	
30	서창리	16-15	지상1층	14,494	서창리	16-15	지상1층	14,494	
31					중앙리	10-1	지상2층	17,100	추가매입

※ 토지는 공시지가, 주택은 공시된 주택가격, 그 외 주택과 재산은 시가표준액

□ 향후계획

O 2022. 9. ~ 10.: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시 의회 상정(안) 제출

○ 2022. 11.: 마을공방 사업대상지 매입

O 2022. 12.: 마을공방 조성사업 건축기획용역 등 건축 업무추진

O 2023. 5.: 마을공방 조성사업 착수

○ 2023. 10.: 마을공방 조성사업 준공

○ 2023. 12.: 도시재생 뉴딜사업(강경마을) 준공

〈담당자현황〉

직 위	성 명	연 락 처	비고
도시재생과장	김민수	746-6200	
도시재생사업팀장	김창배	746-6491	
담 당 자	송영빈	746-6493	

□ 위치도(마을공방 조성사업)



□ 현황사진



참고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조례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 2. 예산의 심의·확정
 - 3. 결산의 승인
 -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기입금의 부과와 징수
 - 5. 기금의 설치 · 운용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9. 청워의 수리와 처리
 -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2(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 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 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신축 ·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 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중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용하지 아니한다.